

[취약계층 지원범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대상자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산림복지소외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관련 피해자 및 가족, 관계자
-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유아, 청소년, 노인 등)
- 기타 국가 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자 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대상자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산림복지소외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관련 피해자 및 가족, 관계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시설의 생활, 이용시설의 이용자 등 해당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 시설	○ 농어촌에지역에한해「노인복지법」제31조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배치한복합노인복지시설을설치·운영가능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 증진을위한특별법」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 설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피해장애인쉼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중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중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노숙인등의복지및 자립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성 가족부	다함께돌봄센 터		○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성매매피해지 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 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 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복 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 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 설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취약계층 증빙서류 1]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증빙서류

-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입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취득사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9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1,887,791	3,424,735	5,225,306	6,004,259	6,438,949
60%	1,132,674	2,504,841	3,153,183	3,602,555	3,863,369
월보험료 납부액	39,643	71,919	110,361	126,089	135,217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x 1/19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3.5%)

제2호 (고령자) 만55세 이상인 자

☞ 증빙서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증빙서류: 복지카드, 장애인확인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 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증빙서류: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 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제 2017-95호, 2018.1.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증빙서류: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 요청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보호대상자)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증빙서류: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증빙서류: 한부모가족 확인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증빙서류: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확인서,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의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증빙서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의 지원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 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4. 구조대상 범죄피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 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
 5. 장해: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중상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 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증빙서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확인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하는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증빙서류: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결과 취득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생략>
4. <생략>

☞ 증빙서류: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증빙서류: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증빙서류: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마. 노숙인

☞ 증빙서류: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증빙서류: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확인)

☞ 증빙서류: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 (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 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 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확인서, 교도소 수용 확인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 받은 자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 증빙서류: 난민인정증명서

차. 보호종료 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자)

☞ 증빙서류: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보호종료증명서

카.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박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박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29.)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 서류로 인정 가능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 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예시) 저소득자로 '15. 4. 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5. 8. 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20. 3. 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예시) 일반근로자로 '15. 5. 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5. 7. 15. 고령자가 된 경우 '15. 7. 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2]

1. (기초생활수급자)

- 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수급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증빙서류: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 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한다.

☞ 증빙서류: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3. (장애수당 수급자)

-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증빙서류: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에서 발급하는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4.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증빙서류: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에서 발급하는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5. (장애인연금 수급자)

- 정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 증빙서류: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6. (다문화 가족)

-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따른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름)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름)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 증빙서류: (결혼이민자 등)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확인서,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의 F-2 또는 F-5, F-6 또는, 관계기관(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직인 포함 확인서(공문)
(아동·청소년) 국적취득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확인과 국적취득자의 기본증명서의 귀화 확인, 국적 미취득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확인과 외국인등록증 상의 F-2 또는 F-5, F-6

[취약계층 증빙서류 3 _ 개인 단위 고객]

-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대상자와 그 가족(최대 5인)도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통해 참가대상에 포함, 대상자 본인이 직접 숲체험교육사업 참가 필수
- * 그 외 취약계층의 경우, 대상자 본인에 한함.